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3. 30 선고 2020가단2488 판결 [계약금등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1. 3. 16.

판결 선고 2021. 3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4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2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, 제194조 내지 제196조

판사이상덕

별지